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번호	2894
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규남 의원이 2025년 4월 2일에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: 제2631호)과 서울특별시장이 2025년 4월 2일에 제출한 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: 제2640호)을 제331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(2025. 6. 19)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은 관람객 대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과학관이나 학생 대상 시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고자 함.
- 또한,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명칭 및 위치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추가함(안 제3조).
- 관람료를 무료로 함(안 제5조).
- 관람료 감면 조항을 삭제함(안 제6조).
-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문구를 정비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권한의 수임자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임사항에 관람료 감면사항을 삭제하며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 관련 사항을 추가함(안 제18조).
- 별표를 삭제함(안 별표).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이 조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“과학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립과학관: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
2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(창동)

제5조(관람료 등) 과학관의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 다만,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는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 중 “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”를 “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장”을 “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5조에 따른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 관련 사항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3조(명칭 및 위치) <u>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“과학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은 “서울특별시립과학관”이라 하고,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에 둔다.</u>	제3조(명칭 및 위치) <u>이 조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“과학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서울특별시립과학관: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</u> 2. <u>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(창동)</u>
제5조(관람료 등) ① <u>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 ③ <u>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관람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.</u> ④ <u>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</u>	제5조(관람료 등) <u>과학관의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 다만,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는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.</u>
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	<u><삭 제></u>

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민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3.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
5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6.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

7.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(20명당 1명)

8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

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
10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

카드에 등재된 가족

11. 과학의 날·어린이 날·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

12.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

13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
3.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

4.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

효한 카드 소지자

5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
3. ~ 6. (생략)

[별표]

제16조(준용) -----

-----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-----

--.

제17조(시행규칙) -----
필요한 -----
-----.

제18조(권한의 위임) -----

-----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제5조에 따른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 관련 사항
3. ~ 6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관 랑 료 (제5조 관련)			
구 분	금액		비고
	개인	단체(20명 이상)	
어 른	2,000원	1,000원	20세~64세